

#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규정

2022. 7. 15. 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메타버스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(이하 “얼라이언스”라 한다.)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,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2조(조직) 본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,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.

1.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
2.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3.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
4. 분과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
5. 기타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

1. 운영위원회는 학계, 업계, 관계기관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
2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3. 제4조(분과위원회)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
4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4조(분과위원회)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
1.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2.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둔다.

3.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한다
4.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국) 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‘한국메타버스산업 협회’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.

제6조(수당의 지급)

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회 원

제7조(회원의 가입)

얼라이언스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-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제 1조 (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